

변경대비표

1. 대상기준

-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

2.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3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(신설) 1. 의의 (기재 생략) 2.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(기재 생략)	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2010년 6월 4일 제정 2016년 6월 7일 개정 2021년 11월 19일 개정 1. 의의 (현행과 동일) 2.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(현행과 동일)	관리용이성 향상을 위해 제개정이력을 추가함

<p>3.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(기재 생략)</p> <p>4. 대상펀드 (기재 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5.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는 집합투자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</p> <p>6. 개정 시행일자 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개정일자는 <u>2016년 6월 7일</u>로 한다. (최초 시행일: 2010년 6월 4일)</p>	<p>3.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대상펀드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예외 1) <u>영업일 펀드자금정산부서의 마감(17:00~18:00) 이후(휴일포함), '잔돈투자서비스' 실행으로 인한 매입신청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되나, 익영업일부터 특정금전 신탁으로 예치되어 운용된다.</u> 2) <u>미운용된 일수의 투자자예탁금의 이자는 동일기간의 투자자예탁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</u></p> <p>6.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(현행과 동일)</p> <p>7. 개정 시행일자 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개정일자는 <u>2021년 11월 19일</u>로 한다. (삭제)</p>	<p>휴일매입신청 허용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운영관련 변경</p> <p>5.→6. 체하</p> <p>6.→7. 체하 및 문구삭제</p>
--	--	--